

「농지임대수탁사업」 한시적 공고생략 제도 종료 안내

한국농어촌공사는 「농지법」 제6조(농지 소유 제한), 제7조(농지 소유 상한), 제23조(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),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4조의4(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)에 따라 「농지임대수탁사업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1. 종료내용

- '20년 5월부터 '21년 말까지 운영중인 한시적 공고생략 제도 종료
 - 신청당시 위탁자(농지 소유자)가 공고를 통한 임차인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가 원하는 임차인(경작자)과 계약체결

2. 종료이유

- 공고생략을 통한 공익형직불제 안착의 정책목표를 달성했으나 청년농 등에 대한 지원을 급감으로 ‘청년농 육성정책’ 달성 미흡

3. 종료 후 업무절차

- 위탁자(농지 소유자)가 신청을 하면 임차인(경작자) 선정을 위한 공고 후 공사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인(경작자) 선정

단 . 다음의 경우에는 공고 생략 후 계약체결 가능

- ① 임대위탁 신청 당시 전업농육성대상자, 전업농 등이 계속 임차(재계약)를 희망하는 경우
- ② 사용대위탁자가 사용차인을 지정할수 있는 경우
- ③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임대위탁 신청 당시 경작 중인 공유자 1인에게 임대하는 경우
- ④ 임대위탁 신청 당시 시설하우스 설치, 과수목 식재 농지 등을 하고 있어 기존 임차인이 영농 희망시 영농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⑤ 임차 희망 농업인의 경작농지와 연접한 농지를 임차하여 농지를 집단화하고자 하는 경우
- ⑥ 지원대상 농지가 친환경 단지 내의 농지로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해당 농지를 임차 신청 할 경우

4. 시행일 : 2022. 7. 1.

2022년 6월 16일

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[직인생략]